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실태 -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사업목적 및 절차적 위법성 관련 국민감사청구)

2020. 2.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	1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2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개요	2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사항	6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부적정(주의)	7
3. 종결처리 사항(감사실시 과정에서 불문 처리)	12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1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는 2005년 8월 수립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 ◇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A 등 5,360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과 2016년 타당성 재조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조사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2019. 5. 30.)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3개 사항(1.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부적정, 2. 2016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부적정, 3.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조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참조)하였으며, 2019.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감사실시가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2019. 11. 25.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5일간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2020. 2. 3.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¹⁾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차량기지 이전(서울특별시 구로구 → 경기도 광명시 ◇동)
 - 입·출고선 9.38km 신설, 3개 역(철산역, 우체국사거리역, ◇역) 신설
- 사업 기간: 2009~2026년
- 총사업비: 9,368억 원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 2005년 8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국무회의 심의, 발표)

3. 삶의 질 개선대책

라. 수도권 주요시설의 재배치

- 수도권 내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 이전은 공간 활용 및 이전비용과 대체시설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 / 구로차량기지도 외곽지역 이전 방안 검토

- 2006년 8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1.00)
- 2007년 8월~200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전부지 검토 결과, 이전부지 미확보로 기본계획 수립 중단
 - 3개 후보지(구로, 부천, 광명)를 선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반대하여 사업 중단
- 2009년 12월~2012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2012년 6월 일시중지)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광명시 요구사항 반영(차량기지 복개, 2개 역 설치)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 (5,294억 원⇒1조 3,823억 원)하여, 타당성 재조사 요건(변동금액 비율 20%초과)에 해당
 - 2012년 8월~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시행
 - 용역 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294억 원에서 4,074억 원 증가한 9,368억 원
- 광명시가 최종 요구한 5개 역 설치는 타당성 확보 곤란으로 3개 역만 설치
 - 나머지 2개 역과 기지 복개는 총사업비 증가(5,857억 원 추가)로 미반영
-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초안)를 구로구 지역에 공람 조치
 - 2016년 12월~2017년 4월: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재착수(2017. 11.)
 - 2018년 10월: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광명시는 2개 역 추가와 기지 복개 건의
 - 2019. 2. 8.: 기본계획수립(안) 광명시 설명(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 등)
 - 광명시의 요구사항 반영 시 총사업비 과다 증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설명
 - 2019. 3. 11.~4. 26.: 전략환경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019. 3. 25. 광명시 주민들의 설명회장 입구 봉쇄로 주민설명회 무산
 -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결과 21,699명 중 17,926명 이전 반대
 - 2019. 4. 19.: 사업 추진현황 설명(광명시장, 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 광명시 및 주민 요구사항(차량기지 복개, 2개 역 추가) 반영 시 총사업비 과다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 반영이 곤란함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2019. 5. 31.: 광명시 공청회 개최
 - 대다수 주민대표 패널은 환경 파괴와 소음문제 심화는 물론, 광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반대 표명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청구인이 제기한 4개 사항 중 감사실시가 결정된 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구로차량기지 이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부적정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 ◇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면서 2018. 10.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광명시의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촉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구로구에서 추천한 ♥동 통장협의회장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광명시에서 추천한 ○○협의회 사무처장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위원으로 각각 위촉
 - 수혜지역인 구로구는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피해지역인 광명시는 배제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광명시 추천 민간전문가가 시민단체 추천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촉되는 결과 초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앞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대표가 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부적정

-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2018. 10.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
 - 청구인은 ○○협의회 사무처장이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반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에 불참했는데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유사한 사업의 심의가 반복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가 가능
- 국토교통부는 2018. 10. 4.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유사한 철도 및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원 9명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와 그 결과를 2018. 10. 12.까지 제출 요청
 - 위원 8명은 심의 결과를 제출, 반면에 ○○협의회 사무처장만 기한 내 미제출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 11. 12.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재요청하면서
 - 같은 해 11. 15.까지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협의회 사무처장은 재요청기한 내 심의 결과 미제출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위원 8명이 제출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처리한 것이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종결 처리

2. 처분요구사항: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및 청구 요지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 ◇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표 1]과 같이 추진하면서 2018. 10.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표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차량기지의 효율적 재분배 ▪ 기존 시설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등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026년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68억 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기지 이전(서울특별시 구로구 → 경기도 광명시 ◇동) ▪ 입·출고선 9.38km 신설, 3개 역(철산역, 우체국사거리역, ◇역) 신설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혜지역 주민대표(♡동 동장협의회)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전예정지 광명시민의 참석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르면 [표 2]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표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구분	내용
1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2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3	▪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4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
5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관계 법령 발췌·재구성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표 3]과 같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다.

[표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명 또는 위촉 현황

구분	내용
1	▪ 협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가관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1명 이상 위촉
3의 2	▪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 2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1명 이상 임명
5	▪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연안육역이 포함된 경우)

자료: 관계 법령 발췌·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주민대표가 1명 이상만 위촉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위반은 아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계획수립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성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있는 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이하 “광명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구로구 보다는 광명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지역의 주민대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광명시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가 추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촉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2018년 3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에 대해 광명시와 구로구를 통해 추천받도록 주식회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 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는 2018. 3. 21. 광명시와 구로구에 유선으로 주민 대표 또는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였고 광명시는 ○○협의회 사무처장 K를, 구로구는 ♥동 통장협의회장 I를 각각 추천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8. 4. 2.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협의 기관(환경부)과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구로구, 광명시) 등에 요청하여 지명 또는 추천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2018. 10. 4. [표 4]와 같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구로구에서 추천한 ♥동 통장협의회장 I를 주민대표로, 광명시에서 추천한 ○○협의회 사무처장 K를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로 각각 위촉하였다.

[표 4]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C	위원장
2	국토부	철도건설과 사무관	D	승인기관
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주무관	E	협의기관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위원	F	관계전문가
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G	환경청 공무원
6	구로구	환경과장	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동 통장협의회	회장	I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8	광명시	환경정책팀장	J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	○○협의회	사무처장	K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10	△△엔지니어링	상무	L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이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수혜지역인 구로구는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전예정지이자 피해지역인 광명시의 주민대표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사실과 다르게 위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업계획의 특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우선 위촉,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는 시민단체

에서 직접 추천받아 위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대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종결처리 사항(감사실시 과정에서 불문 처리)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 10. 4.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은 ○○협의회 사무처장이 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에 불참했는데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유사한 사업의 심의가 반복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8. 10.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표 5]와 같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유사한 철도 및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표 5]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유사한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철도 건설사업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차량기지 건설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덕하차량기지,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등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9명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와 그 결과의 제출을 2018. 10. 12.까지 요청하여 위원 8명은 심의 결과를 제출했으나 ○○협의회 사무처장만 심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8. 11. 12. ○○협의회 사무처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재요청하면서 2018. 11. 15.까지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협의회 사무처장은 재요청기한 내에도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 11. 20. 위원 8명이 제출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종결 처리하였다.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1.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부적정

▪ 청구 요지

-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포화상태로 인한 전동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해소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수도권 차량기지의 효율적 재분배를 위해 추진
-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없이 차량기지 이전을 결정하여 향후 광명시민이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박탈
- ♣마을과 30m 떨어진 지역에 차량기지 정비창 건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 검토 결과

①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결정 관련

- 구로차량기지의 외곽지역 이전은 총 19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국가종합시책으로 2005년 6월 수립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주요시설의 재배치 방안으로 포함
- 2006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광명시 ▷동을 예정부지로 검토했으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과정에서 다른 사업(▽VIC 건설, <△파크 건설)의 추진으로 인해 차량기지 면적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예정부지 변경이 불가피

△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재협의를 통해 2011년 11월 ◇동을 예정부지로 선정

- 이와 같이 구로차량기지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국가종합시책으로 2005년 6월 수립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근거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협의를 통해 광명시 ◇동 일원을 이전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 국가시책인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

② 광명시민과 협의 및 의견수렴 관련

-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재협의를 통해 2011년 11월 선정된 ◇동에 대해 광명시 요구사항을 반영(차량기지 복개, 2개 역 설치 등)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61% 증가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였고

△ 타당성 재조사에서 총사업비 증가(5,857억 원) 등의 문제로 광명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임

- 또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의 건의(차량기지 복개, 2개 역 추가 설치)를 받고 이에 대해 검토·설명(총사업비 과다 증가로 곤란)하는 등 광명시 의견을 수렴·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 2019. 3. 25. 광명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같은 해 5. 31. 공청회 개최하는 등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③ ♪마을 관련

- 국토교통부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해 계곡 지형을 활용하여 차량기지의 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전원주택단지 앞 15.5m까지 경관 향상 및 조망 차폐를 위한 수림대를 조성함과 아울러
 - △ 차량기지의 계획 높이를 주거지보다 8~9m 낮게 하여 ♪마을에서 차량기지가 보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차량기지 내 자재창고 이동, 내부도로 폭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특별히 부당하고 볼 만한 소지는 없음
- ⇒ 이 건 청구사항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각

2. 2016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부적정

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편익비용 추정 의 문제점

▪ 청구 요지

-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편익비용 추정에서 기존 차량기지 토지이용계획을 준공업지역 100%로 설정할 경우 편익비용은 0.82이고 상업지역 80%·준공업지역 20%로 설정할 경우 0.97로 타당성 결여

▪ 검토 결과

-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준공업지역 100%로 설정한 시나리오1의 편익비용은 0.82이고, 상업지역 80%·준공업지역 20%로 설정한 시나리오2의 편익비용은 0.97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이 건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하여 AHP 분석(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시나리오1 0.443, 시나리오2 0.515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단순히 편익비용이 1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곤란

② 정책성 분석 관련

▪ 청구 요지

- 이 건 타당성 재조사는 광명시의 요구사항(차량기지 복개 및 5개 역 설치) 수용을 전제한 판단으로 실제로 광명시 요구사항이 일부(3개 역 설치)만 반영되었고, 그 이후 광명시의 철회 요구와 광명시민의 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성 분석결과는 정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없음

▪ 검토 결과

- 2006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광명시 ▷동을 예정부지로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 차량기지 면적 부족 문제가 발생, 예정부지 변경 불가피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재협의를 통해 2011년 11월 ◇동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광명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61%나 증가하여 이 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책성 분석을 하였는데 재조사 보고서에는 요구사항이 사업추진에 반영되지 않으면 차량기지 이전의 수용이 어렵다는 광명시 입장이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2019년 3월 이후 본격화된 광명시의 이전사업 철회 요구와 광명시민의 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같은 시정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성 분석결과는 정당한 결론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

③ 지역균형발전 분석 관련

▪ 청구 요지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73%로서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평균인 0.309%에 비해 낮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정면으로 반박

▪ 검토 결과

-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분석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73%로서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2008 ~2012년 135개)의 평균 0.309%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 이 건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하여 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시나리오1 0.443, 시나리오2 0.515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곤란

⇒ 이 건 청구사항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각

3.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조사 부적정

▪ 청구 요지

- 자연환경의 보전(수질) 평가항목 관련 차량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각종 화학물질에 따른 직접 및 간접영향권의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오염 등을 간과하고 조사한 바 없음

- 생활환경의 안전성·대기 질 평가항목 관련 차량기지 운영 시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제슬러지, 비산먼지 등에 따른 대기 질과 인접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조사한 바 없음

△ 비산먼지가 슌정수장과 슌배수지에 미치는 오염 및 영향도 간과

-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항목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삼, 멧꿩, 금개구리 등)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사업지역이 중요서식지나 먹이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총괄적인 영향예측을 살펴보면 차량기지예정부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대기 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으로 나누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대기 질과 관련해서는 차량기지예정부지에서 ㉠정수장보다 가까운 지점(예측지점 22: 상업 시설)에서 예측하였는데 환경기준 이내 (PM-10: 기준 $100\mu\text{g}/\text{m}^3$ - 예측 $53.19\mu\text{g}/\text{m}^3$, PM-2.5: 기준 $35\mu\text{g}/\text{m}^3$ - 예측 $29.39\mu\text{g}/\text{m}^3$)로 나타났고
- △ 수질과 관련해서는 차량 세척에 따른 폐수 발생이 예측되었는데 폐수는 전량 차량기지 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토양과 관련해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토양오염이 예측되었는데 관련 법규 준수와 더불어 누유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배수지는 저류조 형태의 지하 밀폐 시설로 비산먼지의 유입이 미미하고,
- △ ㉠정수장은 예측지점보다 먼 곳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영향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주민공람 시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차량기지 공사 시 비산먼지가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예측했는데 환경기준 이내(PM-10: 기준 $100\mu\text{g}/\text{m}^3$ - 예측 $49.72\mu\text{g}/\text{m}^3$, PM-2.5: 기준 $35\mu\text{g}/\text{m}^3$ - 예측 $29.04\mu\text{g}/\text{m}^3$)로 나타났음
- 또한, 차량기지 운영 시 차량 외관 청소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내에서 청소작업을 진행 (검수구의 공기 청소선에서 레일식 및 이동식 집진기 사용)하게 하는 등 외부 발생을 억제하는 계획을 수립
- △ 철제슬러지는 차륜 전삭공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밀폐된 차륜전삭고 내에서 전삭하고, 전삭된 철제 분진은 전량 분철집으로 이송 포집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외부 배출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서는 문헌 조사에서 황조롱이, 소쩍새, 맹꽁이가 확인되었고 현지 조사에서 샛새 확인되었으며 금개구리는 문헌과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황조롱이, 소쩍새 등의 맹금류와 샛새 등의 특성(맹금류: 뛰어난 비행능력, 넓은 서식반경 / 샛새: 뛰어난 이동능력, 넓은 서식반경)으로 볼 때, 사업 시행 시 교란 요인에 따른 이동서식을 예상
- △ 반면에 이동능력이 부족한 맹꽁이에 대해서는 서식지 보호 대책(저소음·저진동 장비 운영, 비훼손지역 보호 등)을 마련하고, 서식이 확인되면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
- 참고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 이 건 청구사항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각